

제11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09. 3. 24(화), 15:00~16: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율곡관 204호)

3. 참 석 : 총 13명 중 11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이일영 의장, 이원희 부의장, 이순일, 오상탁, 이화숙, 최인규, 김찬영, 김관균, 이해진, 박상호, 박윤규 평의원 (이중한 간사)
- 불참 평의원 : 유승화, 유승익 평의원

4. 회의안건(심의사항):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열대학연구소 신설에 따른 기구표 개정
-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권고사항에 따른 학위기 명칭 개정
- 「학생군사교육실시령(2007.4.12. 대통령령 제20003호)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2007.6.22.국방부령 제629호)에 의거 하여 학군후보생의 초과학점 신청 가능하도록 함
- 졸업연기 신청기간 변경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에 의거하여 선발 및 등록인원, 선발대상 및 전형자료 명시, 시간제등록생 적용 근거 마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32조(학칙 등의 작성)에 의거하여 관련 내용 반영
- 「고등교육법」제11조의2(평가)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제3항에 의거하여 관련 내용 반영

5. 개회선언

의장 이일영 : 재적평의원 13명 중 11명의 평의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선 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중한 : 회의자료에 있는 보고사항은 지금까지 평의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 간서명 란 >

의 장



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획처장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고사항은 보완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기획처장께서 토지매입 등을 정리하여 다음회의에 가져오기로 하였으므로 다음회의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회의안건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평의원 최인규 : 다름이 아니라 오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행사인 학생총회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참석이 어렵습니다.

의장 이일영 : 그러면, 지난번 회의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안전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최인규 :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안전은 학군후보생의 초과 수강신청과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에 관한 안전입니다. 학군후보생의 초과 수강신청에 대해서는 간사께 좀 더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바 있으며 시간제등록생 선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이 수업 중 교수대 학생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보아야 하고 설명을 들어야겠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 평의원회에서 논의를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장 이일영 : 평의원 중 이 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는 평의원이 있으므로 교무처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이중한 : 교무처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최인규 : 지난번 회의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4가지 정도 있었는데, 공학인증, 학군후보생 초과 수강신청, 시간제등록생 선발,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 공학인증과 장애학생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학군후보생의 초과 수강신청의 경우 현재 수강신청 학점이 2003학번까지는 21학점, 2004학번 이후부터는 19학점인데 학군단후보생에 한하여 3학점을 더 들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학칙개정사항이었습니다. 그 학칙에 대하여 고민을 좀 더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이일영 : 학군후보생이 몇 명입니까?

평의원 최인규 : 학년당 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학군단후보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3학점을 제외하면 다른 학생들

< 간서명 란 >

의 장



과 동일하게 듣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의원 최인규 : 그때 논의되었던 것은 시급하게 모여서 위 안전들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학생 측에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장애학생 지원 문제와...

의장 이일영 : 장애학생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평의원 최인규 : 장애학생 지원 및 학습권 보장, 공학인증 문제는 별 문제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안전이지만 학군후보생 초과 수강신청 문제는 좀 더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간사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군후보생 초과 수강신청 문제는 검토한 결과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일영 : 학군후보생 초과 수강신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간제등록생 선발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평의원 최인규 : 저희 판단으로는 시간제등록생 선발이 학부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들어서 평의원회에서 논의를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습의 질, 교육의 질 부분입니다. 수강생이 늘어날 경우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가 더욱더 증폭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 67조의 2(장애학생 지원)의 내용은 애매합니다.

의장 이일영 : 어느 부분입니까?

평의원 이순일 : 3페이지에 있는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학습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이것은 제가 전공한 분야인데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점자이고 시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입학하게 되면 도서를 점자로 해야 하고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입학할 경우에는 강의내용을 타이핑 해 줄 수 있는 도우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한국재활복지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학생을 받지 않는 경우 이법에 의하여 3,000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구비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에

< 간서명 란 >

의 장



서도 통합교육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애학생이 입학할 경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평의원 박상호 : 보조원을 한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합니까?

평의원 박상호 : 모든 시설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사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반대로 우려하는 부분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면 원래 취지대로 추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위성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조항인지... 별금을 내지 않는 정도로만 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장애학생이 가버리면 램프를 뜯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누군가가 모니터링을 해주어야 합니다. 교무처장이 오셨습니다. 학생회에서 문제 삼았던 회의안건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교무처장께 학생대표 평의원께서는 시간제등록생 선발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최인규 : 시간제등록생 규모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시간제등록생은 현재 학내에서 교육의 질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부생들에게 불이익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제도를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한 학칙 변경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의장 이일영 : 교무처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무처장 이종섭 : 학칙개정을 해서 학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칙개정은 이미 전 학칙에도 시간제등록생을 받을 근거가 있습니다. 학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바뀌어서 그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학칙개정을 한다고 해서 시간제등록생을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학교에는 시간제등록생이 10명 있습니다. 시간제등록생은 풀타임 학생이 아니고 대개 1과목 정도를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의장 이일영 : 다른 대학에서 옵니까?

교무처장 이종섭 : 다른 대학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의장 이일영 : 청강생 비슷한 것입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교무처장 이중섭 : 청강생입니다. 대부분 직장에 다니면서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려고 생물학, 화학 등 1~2과목을 듣고, 듣는 학점수에 따라 수강료를 냅니다.

의장 이일영 : 실제 학점을 받습니까?

교무처장 이중섭 : 학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칙개정과 관련하여 학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은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 설명이 되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평의원 최인규 : 문제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 그러면 간사께서 나머지 회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중한 : 먼저 열대학연구소 추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대학연구소를 학칙 별표1(기구)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대학원에 있는 시스템공학과와 의 경우 계열에 속하지 않는 학과(부)에서 공학계열로 학칙 별표2(대학원)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학인증에 관해서는 학칙 별표5(학사과정)의 주)부분을 사)한국공학대학교 인증원 권고사항에 따라 “인증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은 인증 여부에 기인된 표현이므로 교육과정 명칭으로 부적합하여 학칙 별표5(학사과정)의 “인증”을 “전문”으로 수정하고, 전공 교육과정으로 졸업하는 학생의 전공명 표기를 “00일반전공”을 “00공학전공”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학생 지원(제67조의2)에 대한 학칙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학칙에 근거조항을 만들고 이에 대한 세부운영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세부운영규칙이 만들어 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3조의 자체평가의 경우에도 장애학생 지원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제3항에 의거하여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여 세부운영규칙을 만들기 위한 근거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이번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평의원회에서 크게 심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논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순일 : 논의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 논의 없으시면 학칙개정에 대하여 평의원 전원동의하에 통과하는 것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만장일치 동의에 의하여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다.)

6. 폐회선언

의 장 : 이상과 같이 심의사항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 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7. 기타 결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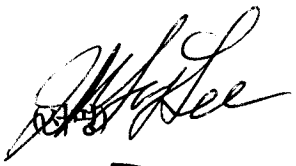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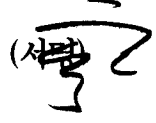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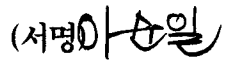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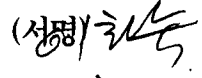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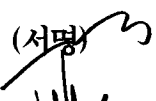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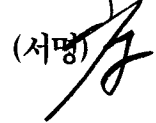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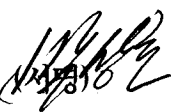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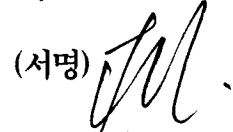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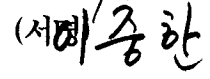
- 제1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일정 확정: 2009. 4. 23(목) 14:00
- 제1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안건
 - 박종구 전 교과부차관의 특별채용 및 부총장 임명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보고 및 향후 재발방지 논의(교수회 대의원회 총무 안재홍 교수 설명 요청)
 - 학교기금의 Fund 투자에 관한 사항(총무처장 설명 요청)

< 간서명란 >

의 장



2009년 03월 24일

의 장	이 일 영	(서명) 
부 의 장	이 원 희	(서명) 
평 의 원	유 승 화	(서명) 불함
평 의 원	이 순 일	(서명) 
평 의 원	유 승 익	(서명) 불함
평 의 원	오 상 탁	(서명) 
평 의 원	이 화 숙	(서명) 
평 의 원	최 인 규	(서명) 
평 의 원	김 찬 영	(서명) 
평 의 원	김 관 균	(서명) 
평 의 원	이 해 진	(서명)
평 의 원	박 상 호	(서명) 
평 의 원	박 윤 규	(서명) 
간 사	이 중 한	(서명) 
기 록	진 성 호	